

갈수록 중요해진다

- 소수주주권 바로알기

❖ 소수주주란 무엇인가?

증권거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이 정의되어 있기는 하나, 소수주주에 대해 상법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소수주주는 일반적으로 지배주주의 반대개념으로서, 그 주식소유 비율이 적어서 대상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를 의미한다. 상법 및 증권거래법은 소량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임시주총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요구권 및 이사회이사록 열람청구권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 개별 권리에 대해 살펴본다.

❖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0.1%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회계장부에는 회사의 지출 및 수입과 관련되는 계약자료, 매출 관련 자료 등은 포함되나 투자계획, 자금계획 등 예측자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회계장부 열람 청구시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부정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회사 경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막연한 이유를 대어서는 안되고, 회사에서 부정이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 검사인선임 청구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행해지고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사 해임청구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0.5%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를 해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경우, 위 주주는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현 경영진이 부정행위나 위법행위를 하였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소수주주로 하여금 법의 힘을 빌어 해당 경영진을 문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0.05%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유지청구는 가처분의 형태로 나타나며, 법원은 대상행위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된 사실이 소명될 경우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주고 있다.

❖ 대표소송 제기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0.01%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바람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란, 과거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주주들은 경영성과나 임원선임 등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아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국제 투자자본으로서, 그들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주주행동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주주들의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권 교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따라서 본 호에서는 주주행동주의의 법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만일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고, 주주는 소송비용 등의 제반 비용을 회사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회사가 지체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주주총회가 개최되더라도 현 경영진이 과반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해당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가 제안한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다.

❖ 주주제안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6주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일정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제안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만일 이사회가 그 안건의 상정을 거부할 경우, 이사들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제안된 안건의 상정 없이 진행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이미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안건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이사회는 해당 안건의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 집중투표청구권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이 예정된 경우, 1개의 주식마다 선임될 이사 수 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특정 이사후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배제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로써 소수주주들도 의결권을 특정 이사후보에 집중투표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권

모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회사에게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999. 12. 31. 상법 개정이전에는 회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했으나, 당시 회사기밀유출 등 부작용이 있어 주주에 한하여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글 변호사 엄재민

- 법무법인 화우(02-6003-7524, jmuhm@hwawoo.co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유럽경영대학원(Insead) 경영학석사(MBA)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